

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2.1.19>

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·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(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)

1.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·연구 승인번호는 국호(國號)의 약자(略字), 업종 또는 허가·승인의 구분, 허가·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.
2. 업종 또는 허가·승인의 구분과 허가·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.
3.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본국: J, 중화인민공화국: C, 러시아 연방: R, 기타 국가: E

4. 업종 또는 허가·승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어업활동 허가

기선저인망어업: 21, 트롤어업: 22, 선망어업: 23, 채낚기어업: 24,
자망어업: 25, 안강망어업: 26, 봉수망어업: 27, 통발어업: 28,
연승어업: 29, 기타 어업: 30, 어업 외의 어업활동: 40

나. 시험·연구 승인: 70

5. 허가·승인의 일련번호는 허가·승인의 순서에 따른 업종별 일련번호로 한다.

<예시>

가.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예: E21·0045(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 제45호)

나. 시험·연구 승인번호의 예: E70·0001(기타 국가 시험·연구 승인 제1호)